

한화생명 알고받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016. 1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 한화생명 알고받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종, 2종]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구 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 5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 가입최저나이 : 만 15세
- 가입최고나이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5]세

라. 연금개시나이

- 55세~80세

(다만, 가입나이가 만15~19세인 경우는 55~70세, 가입나이가 20~24세인 경우는 55~75세)

마. 보험료 납입주기

- (1) 기본보험료 : 월납
- (2)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조건부인수를 위한 부가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표준하체인수특약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하지 않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의 정의 및 납입한도

-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구좌당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5년납은 구좌당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정의 및 납입한도

- (1)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 기간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제26조(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의 납입유예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으로 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가)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나)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text{기본보험료} \times \text{가입 후 경과월수} + \text{선납보험료}) \times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만,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중도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매월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다만,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구좌 가입시 기본보험료를 더하여 적용한다).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초과분의 1.5%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00원 + 200만원 초과분의 2.0%
300만원 이상	50,000원 + 300만원 초과분의 2.5%

나.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가’항을 적용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할인되지 않는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로 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다만, 선납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며, 선납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월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

※ 특별계정투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에서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

다. 특약보험료의 경우 ‘가’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특약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가’항의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한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제10조(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시까지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연체보험료 완납일 이후에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질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의 「제23조(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항(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제(2)호(좌당 기준가격)에서 정한 좌당 기준가격(이하 ‘기준가’라 한다)」을 적용하여 부활(효력회복)승낙일을 기준으로 이체한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전일(前日) 이전 5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다.
-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에 의한 납입유예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납입 유예기간 중 잔존 납입유예월수 × 약정보험료(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하 '약정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중도인출의 효력이 발생되며, 신청 후 중도인출금이 지급되기 전의 최저사망적립금, 최저연금기준금액, 연금기준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 보험료는 제21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관한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 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 마. '가'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200만원과 기본보험료의 12배 중 작은 금액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바.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만, 약관 [별표 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의 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에 판매중인 금리연동형 무배당 연금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가'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 다.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납입연체를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4.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월공제액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단, 월계약 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책임준비금 제외)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시 월공제액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 (2)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 (3)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적립금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음)
- (4) 특약보험료에서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납입유예기간에 한함)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최저사망적립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적립금이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 사망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제21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

18. 최저연금기준금액에 관한 사항

가.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1종의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제22조(「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기준 기본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기준 기본보험료'라 한다)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제22조(「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라 한다)'에 납입기간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기

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4/100 해당액을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 기준금액으로 한다.

2종의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납입기간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2.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2/100 해당액을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6조(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의 납입유예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위의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으로 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7조(「개시전 활용자금」에 관한 사항)에 의한 개시전 활용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시전 활용자금을 지급한 날부터 1년간 기준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일자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할 경우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인출 또는 감액 이후에 '가'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감액신청직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감액신청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감액신청직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신청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 (2) 인출신청직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인출신청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인출신청직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신청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 (3) 감액신청직후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감액신청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감액신청직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신청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 (4) 인출신청직후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인출신청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인출신청직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신청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 (5) 「인출(또는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인출(또는 감액)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또는 감액) 전에 인출(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계산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한다.

다. 회사는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19. 연금기준금액에 관한 사항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연금기준금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출신청직후의 연금기준금액

$$= \text{인출신청직전 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인출신청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신청직전 계약자적립금}}$$

(2) 「인출신청직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한다.

20. 실적배당 종신연금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기본지급률

연금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59세	0.30%	0.27%
60~69세	0.34%	0.29%
70~80세	0.37%	0.37%

(2) 투자실적 가산율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 대비 계약자적립금의 비율 (계약자적립금 / 최저연금기준금액)	가산율
60% 미만	3%
60% 이상 90% 미만	20%
90% 이상	35%

(3) 장기유지 가산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 가입나이)	가산율
5~19년	0%
20~29년	10%
30~39년	20%
40년 이상	30%

(4)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 기본지급률 × (1 + 투자실적 가산율 + 장기유지 가산율)

나.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이라 함은 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연금기준금액보다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이라 함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월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증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1.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하거나, 약관 제4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또는 약관 제50조(개시전 활용자금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시전 활용자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11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다’항, 제17조(최저사망적립금에 관한 사항), 제28조(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 관한 사항) ‘가’항 등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신청 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감액신청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신청직후 기본보험료}}{\text{감액신청직전 기본보험료}}$$

(2) 인출신청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신청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신청금액}}{\text{인출신청직전 계약자적립금}}$$

(3)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지급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지급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개시전 활용자금}}{\text{지급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신청직전(인출신청직전,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신청(인출신청,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 발생 전에 감액, 인출 및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이 발생한 경우 ‘나’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22.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개시전 활용자금에서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말하고,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한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감액신청직후의 ‘기준 기본보험료’

$$= \text{감액신청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 $$\times \frac{\text{감액신청직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신청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 (2) 인출신청직후의 ‘기준 기본보험료’
= 인출신청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신청직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신청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 (3) 감액신청직후의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신청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신청직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신청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 (4) 인출신청직후의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신청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신청직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신청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 (5) 「인출(또는 감액) 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인출(또는 감액) 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인출(또는 감액) 전에 인출(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에서 제(4)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23.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 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한다.
- (4)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 및 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채권형Ⅳ

주로 채권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인수인수권부사채 등), 자산
유동화증권 등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등
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임.

(나) 일반주식형Ⅳ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 및 집합
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임.

(다) 인덱스주식형Ⅳ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 및 집합
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임.

특히, 주식투자 부분은 KOSPI200 등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라) 글로벌주식형Ⅳ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환위험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임.

특히, 주식투자 부분은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예: MSCI
AC World Index 등)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마) 이머징주식형Ⅳ

이머징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환위험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임.

특히, 주식투자 부분은 이머징 주식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예: MSCI
EM Index 등)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2) 펀드는 5개 이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3)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4) 펀드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제(1)호의 각 펀드 유형별 투자한도를 적용
하지 않으며,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헤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
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기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
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구분	비용
채권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25%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0684932%)
일반주식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65%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1780822%)
인덱스주식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45%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1232877%)
글로벌주식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40%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1095890%)
이머징주식형IV	

(2) 펀드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비용
채권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10%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0273973%)
일반주식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30%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0821918%)
인덱스주식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20%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0547945%)
글로벌주식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73%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2000000%)
이머징주식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83%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2273973%)

(3) 펀드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비용
채권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01%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0027397%)
일반주식형IV	
인덱스주식형IV	
글로벌주식형IV	
이머징주식형IV	

- (4) 펀드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비용
채권형IV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01%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0027397%)
일반주식형IV	
인덱스주식형IV	
글로벌주식형IV	
이머징주식형IV	

- (5) 회사는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 펀드별 금액을 1년 단위로 환급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한다.

○ 펀드별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액

= 펀드별 직전 1년간 일별 계약자적립금의 합계 × 펀드별 일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비율 ×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률

계약일부터 유지기간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률	
	1종	2종
11~15년	10%	5%
16~20년	15%	7.5%
20년 초과	20%	10%

※ 펀드별 일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비율이라 함은 펀드별 일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펀드별 일단위 특별계정적립금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항에서 정한 펀드 중 채권형IV펀드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펀드별 편입비율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채권형IV의 편입비율은 「1종의 경우 70%, 2종의 경우 50%」(이하 ‘채권형IV 최소편입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마’항 제(7)호에 따라 채권형IV 최소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채권형IV 최소편입비율을 적용한다.
- (2)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제(1)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른다.
- (3)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투입된다.
- (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마. 계약자의 펀드 변경

- (1)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펀드별 보험료 편입비율과는 별도로 계약자적립금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호에 따라 펀드별 보험료 편입비율 변경시 '라'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3) 제(1)호에 의해 계약자적립금의 펀드 변경시 채권형IV 펀드에서 이외의 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채권형IV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은 채권형IV 최소편입비율이 상으로 해야한다. 다만, 변경시 채권형IV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채권형IV 최소편입비율 미만인 경우 채권형IV 펀드에서 이외의 펀드로 변경할 수 없다.
- (4) 회사는 제(1)호에 따른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5)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6)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사'항의 펀드자동재배분과 합산 횟수)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 (7)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채권형IV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70%(이하 '실적배당 중신연금형의 채권형IV 최소편입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IV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실적배당 중신연금형의 채권형IV 최소편입비율 이상이 되도록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동 조정한다.

바.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해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에 채권형IV 이외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합계액 중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1종의 경우 30%, 2종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IV펀드로 이전된다. 다만, 매년 계약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2)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3)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없다.

사.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를 말하며, 이하 '펀드자동재배분 주기'라 한다)마다 '라'항 제(1)호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된다. 다만,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2) 제(1)호의 경우 펀드 자동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라'항 제(4)호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된다.
- (3)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보험년도 기준 연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전에 선택한 펀드자동재배분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 (4)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선택을 접수한 경우 펀드자동재배분시 마다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마'항의 펀드 변경과 합산 횟수)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 (5)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한 경우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다.

아.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2) 제(1)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 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펀드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펀드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펀드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펀드의 순자산가치}}{\text{펀드의 총 좌수}}$

※ 당일 펀드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펀드의 총자산에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차.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
-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펀드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펀드가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 이내에 일반계

정으로 상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카. 펀드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펀드를 폐지할 수 있다.

(가) 해당 각 펀드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 해당 각 펀드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펀드를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타.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비용, 보수, 회계감사비용 및 채권평가비용 등을 펀드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24.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과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다만,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제8조(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나'항 또는 제30조(기타사항) '나'항에 따라 이체한다)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금(실적배당 종신연금 포함)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중도인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3)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이 있는 경우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5)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6)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실행된 경우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제(1)호에 따른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5.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제4-15조 관련)에서 정한 적립기준에 따라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을 적립한다.
- 나. 최저사망적립금 보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제4-15조 관련)에 따른 변액연금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GMDB)으로 분류한다.
- 다.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제4-15 조 관련)에 따른 변액연금의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보증(GLWB)으로 분류한다.

26.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의 정의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이하 '납입유예'라 한다)할 수 있는 제도

나. 신청 조건 및 한도 등

(1) 신청조건

다음 각 목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보험계약일부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절반(약정 납입월수 기준) 이상 지난 계약. 다만, 10년납 이상은 5년이상 지난 계약
- (나)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이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약정보험료보다 큰 계약
- (다)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이외의 선택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계약

(2) 신청 1회당 납입유예가능기간

납입유예 신청월수에 해당하는 약정보험료의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이하이어야 하며, 12개월을 최고 한도로 신청 가능하다.

◎ 신청 1회당 납입유예가능기간(월수)

$$= \text{Min} \left(\frac{\text{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text{약정보험료}}, 12 \text{개월} \right)$$

(3) 최대가능기간

신청횟수와 관계없이 5년납은 최대 2년(24개월), 5년납 초과는 최대 3년(36개월) 이내로 한다.

다. 납입유예의 종료

- (1)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을 안내(미납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납입유예기간 중 제14조(월공제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이하 '월공제액'이라 한다)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 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로 정한다.
- (3)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약정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유예종료를 신청함으로써 약정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된다.

라.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 계약자는 약정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다만, 추가 납입보험료는 납입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 경우 납입기간 종료일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다.
- (3) '나'항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시점까지의 기간이 제2조(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도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이 제2조(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서 정한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 (4) '나'항 및 '다'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일부터 12년 이상 지난 후 납입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 연장 및 연금개시시점 연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 (5)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해당월의 월공제액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 (6)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납입유예를 한 계약은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기 납입유예된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7. 「개시전 활용자금」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개시전 활용자금

1종의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의 4%, 2종의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일

(연금개시나이 - 5)세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중 「신청일+ 제2영업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단위 계약해당일

나. 계약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해 개시전 활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계약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

(2) 납입기간(다만, 납입유예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입기간 포함)이 지난 경우

(3) 개시전 활용자금 신청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회사는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일에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서 개시전 활용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일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의 70% 미만인 경우 개시전 활용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 계약자는 개시전 활용자금 지급일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28.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 관한 사항

가.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함은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항에 따라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실행된 경우 제30조(기타사항)의 제 '바'항의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으로 전환된다.

다. 회사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 되기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과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실행된 경우의 월 기준 연금액' 등을 비교해서 안내한다.

29. 헬스케어 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가.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신용]정보수집,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한다.

나.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다.

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30. 기타사항

가. 보험종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 보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1회만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한다. 보험종목 변경 후에는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내용을 따른다.
 - (가) 계약일부터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 (나) '보험종목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연금개시나이-가입나이-보험료 납입기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다) '보험종목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2) 제18조(최저연금기준금액에 관한 사항) '가'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되기 전까지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재계산하지 않고,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된 보험종목에 따라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나.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제(1)호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회 보험료는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평균공시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월계약해당일-제2영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기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추가납입보험료
 -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 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가'목에 따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로부터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라. 보험계약관리 내용 통지

회사는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제2항 제4호에 따라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분기별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하며, 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2) 회사는 다음 각목의 사유 발생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 또는 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한다.
 - (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바.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의 적용에 관한 사항

- (1) 대상계약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약으로 연금개시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
- (2)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 피보험자
- (3) 운용방법
 - (가)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해지에 의한 해지환급금의 전부를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한다.
 - (나)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특약 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4) 안내사항
회사는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으로 전환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사.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아.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자.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차.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에 관한 사항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카.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 납부는 '17.1.1부터 가능하다.